

-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이현찬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805호

다. 제출일자 : 2019. 8. 2.

라. 회부일자 : 2019. 8. 13.

2. 제안사유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서 하여금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는 평가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권한규정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고, 또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누락된 약칭을 정의함(안 제3조제1항 및 제10조).
- 나.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를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함(안 제18조 제1항)
- 다.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 하도록 함(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)
- 라. 문구 등을 법령에 비추어 통일적으로 수정함(안 제18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9. 8. 19 ~ 2019. 8. 26
 - 제출의견 : 의견없음
- 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 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) : 원안가결
 - 안 제18조제1항 관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를 시장의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는 관련법에 근거하여, 조례상 관련 평

가에 대한 시장 의무를 재량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에 동의함

-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평가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평가의 환류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, 조례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함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은 “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제공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는 평가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권한규정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,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는 평가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“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도록” 하고 있는 사항을 “할 수 있다”로 변경하는 한편, 평가결과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임
- 현행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제 18조제1항¹⁾에서는 시·도지사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평가를 “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법에 근거하여 조례

1)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)
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상 권한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의 후단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)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대한 평가결과를 시장이 해당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임

현재 서울시는 ‘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’을 통해 65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해당 결과를 e-BusNet³⁾ 등을 통해 각 업체에 통보하고 있음

또한, 137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‘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매뉴얼’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각 업체에 통보하고 있는 만큼,

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사항 및 실제 운영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개정이 가능할 것임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은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등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로 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여 조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2)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(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3) e-BusNet :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노선·정류소·운전자·차량 등의 기초 자료를 관리하여 투명한 정산업무 수행 및 기초 정보 제공 시스템